



두엄누리회보 제 51 호

2007년9월30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비료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지난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일시: 2007.9.4

▲장소: 농림부 소회의실

▲회의주제: 농림부 조원량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참석자: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장 명철사무관, 이성한 주무관, 농촌진흥청 박명한 비료담당 사무관, 한상균 주무관, 강원. 전북. 경남도 비료담당 사무관, 농협중앙회 비료팀장, 한국비료공업협회 이 인건 이사 한국 부산물비료협회

이 날 거론된 주요 내용 중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비료 생산업 등록 시 갖춰야할 시설기준 중 퇴비와 그린1급 퇴비의 시설기준을 분리하여 각각의 각각의 비종별로 별개의 생산시설을 보유하도록 하는 문제가 거론되

었다. 현재는 퇴비와 그린퇴비가 별도의 비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생산(발효)시설 하나만 있으면 퇴비와 그린퇴비를 같이 생산 할 수 있게 되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론되게 되었다. 또, 농협납품업체 관리 규정에 위반 시 업체와 생산시설을 모두 제제하고 있는데 두 가지 비종을 모두



지난 9월4일 농림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조원량과장 주제로 비료관리법 하위법령개정(안)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우로부터 조원량과장, 진흥청 박명환사무관, 한상균주무관, 농협 임병교팀장)

어있다. 하지만 퇴비와 그린퇴비 모두 일 년 내 내 연속적으로 생산시설을 가동하여야 봄철에 집중되어있는 물량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한 가지 시설에서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린퇴비의 경우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펠렛 성형기로 유박과 같이 단순 원료 배합과정만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시설기준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비료와 그린퇴비가 비종이 달리 되어있다 하여 한 가지 비종만 처분하고 한 가지 품목은 처분 받은 동일 시설로 계속 생산 활동이 가능한 모순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동일 생산시설로 사용 원료만 달리 하면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기존 그린퇴비등록 업체들의 추가시설보완 문제를 고려하여 차라리 퇴비와 그린1급 퇴

비는 같은 퇴비 비종으로 묶어 하나만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두 같이 처리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용원자재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비료생산업등록이나 수입업 신고 시 제출한 제조

하였으나 사용비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사용비율을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사용비율은 오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용원료의 변경 시에는 등록변경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으로 논의 되었다.

◆생산업등록 변경시 첨부되는 검사 성적서는 현재는 국가기관이나 농과계열학과가 있는 종합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시험기관성적서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가능토록 논의 되었다.

◆그 외 생산업 등록 시 제출되는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에 대하여 공장 이전의 경우 발행기관에서 재발급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후 등록업무가 시, 군으로 이양되기 전 담당 공무원의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는 등 여러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이 논의 되었다.

그린1급퇴비 별도시설 기준 설정 방안

사용원료 조사는 배합비율 보다 원료종류 더 중시

생산업 변경 등록 시 민간인증기관 성적서도 유효하도록 검토

◆비료수입업신고시 농약성분 등 부적합 원료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량요소비료, 4종 복합비료는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과 재배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게하였다.

◆보증표시의 경우 그동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 보증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비료판매업자는 신고 의무조항이 없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추적처벌이 불가능하여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업자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행정처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퇴비의 경우는 수분조절제로 사용하는 톱밥이나 왕겨의 경우 수급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원료를 원재료와 부재료로 나누어 부재료의 경우는 변경 양이 기존사용량의 50%가 넘을 경우에만 등록변경을 하는 것으로 건의



부산물비료 생산업 명예지도원 제도 시행

지난 9월1일 우리 협회와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은 농촌진흥청장으로 부터 부산물비료 제조업 명예지도원증을 교부 받았다. 우리 협회는 회장과 사무국장 외 각 도 1인씩 총 10인이 명예지도원증을 교부 받았다. 『유기질비료업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제조기술 확립 및 관리체계구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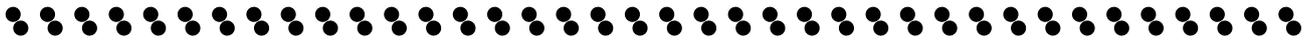
하고, 양질의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토양과 환경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된 이 제도는 각 단체의 회원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지도 및 홍보할 수 있다. ●무등록비료 제조. 유통 금지 지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물질로 퇴

비제조. 유통금지 지도 ●유기질(부산물)비료 제조. 유통 관리에 관한 자체교육 및 정부시책 홍보 ●유통되는 부정. 불량 비료에 대한 정보 등을 해당 등록권자에게 제공 ●부정. 불량퇴비 지도. 점검 시 명예지도원 참여 협조 등이다. 타 단체의 회원사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야할 업무가 발생하면 양 단체 간 합동으

로 지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개정된 비료 관리법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생산 업등록증에 신고된 원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무허가 비료에 대한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7친환경농업 발전 토론회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 활성화 방향 모색

□ 목 적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제도적 정비, 법제 방향을 모색함.

○ 친환경농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상호 친목 도모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 9. 7(금) 오전 10:00 ~ 오후 16:30

○ 장소 : 엑스포 공원 내 영상관(울진군)

□ 주최 : 울진군

주관 :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이태근 회장), 한국농어민신문사(서규용 사장)

후원 : 농림부, 농진청, 경상북도



정부는 최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를 도입,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의 효능과 성분함량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초기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인증방법, 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로의

명칭변경 등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500여명의 관련기관과 업체, 친환경농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토론회’를 열고 발생되는 제도적 개선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농촌진흥농업자원과 안인 과장은 “친환경유기농자재는 대부분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 후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미등록 제품은 제조자, 성분규격 등의 표시 없이 임의유통 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상 다양한 형태의 자재가 사용가능하다.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 후 비료나 농약적 효능을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으나 일부 등록하지 않고 유통되는 자재 중에 용도, 사용원료, 효능 등 애매하게 표기해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아 농업인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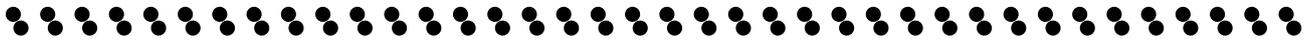
이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를 시행하는데 자재의 효능과 성분함량을 보증하지 않고 해당제품이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한지 여부만을 검토해 결과를 공개한다. 목록 공시는 제출된 자료를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천연물질 등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한 자재여부를 검토한다. 향후 미

등록 자재는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개발,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목록 공시된 자재는 GAP농산물 생산에 활용하고 생산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도 추진 한다”고 하였다. 청중발표시간에 우리 협회는 “**현재 퇴비는 생산 공정**에 반드시 부속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어 **효라나 비해에 있어 비료 중에는 최고의 안전성 및 효라를 인정받고 있는 물질이다. 발효공정을 거치지 않는 유박비료나, 비료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기타 제품 등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효라 및 비해(肥害)시현을 해야 하는 것은 목록공시 업무의 기본방향에 어긋나며 비료관리법과 정면 배치(背馳)되는 규정이다. 또한 효라나 비해 시현을 하려면 기간도 한 작물 당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며 경비도 300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퇴비의 경우는 전국의 천개 가까운 업체 중 단 한건도 목록 공시된 제품이 없다. 또 비료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 외에 잔유항생물질 검사와 유해물질의 함량을 공정규격의 1/2 이내로 줄여야 하는 등 추가를 검사하고 있어 이것만으**

은 비효율 등측된 퇴비의 경우
 는 유기농자재로 목록공시
 를 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유기비료공
 업협동조합 박 상욱이사장도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원주체

가 친환경농가인지, 유기농농
 가인지 혼선을 빚고 있으며 퇴
 비에 대해 비효 및 비해 실험
 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축분은 문
 제를 삼으면서 혈분, 골분 등

은 그대로 유기농자재로 인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
 니냐“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
 구하였다.



친환경농자재 목록 공시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일시 : 2007. 10. 1(월).

장소 : 농촌진흥청(국제 회
 의실)

참석대상 및 인원 : 150여명

○ 친환경농자재 전문위원
 및 심의위원 40명

○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
 업과학기술원,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30명

○ 친환경 관련 단체, 관련
 업계, 시험연구기관 관계관
 80명.

최관호(흙살림), 이상범(농
 과원) 전문위원의 외국유기농
 자재 관리제도에 대한 발표
 후 농업자원과 안인과장의
 주재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전
 문의원과 함께 토론회 가 열
 렸다. 이 자리에서 농업자원
 과 안인과장은 퇴비의 경우
 는 업체의 불만사항을 고려
 하여 제출서류 중 효과시험
 성적서는 빼고 간단한 비해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
 나 비해 시험도 검사 가능한
 기관에서는 작물재배 후 결
 과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효

과시험과 동일하여 많은 시
 간과 경비가 필요함으로 이
 를 개선하기위해 농약의 약
 해 시험 검사를 하는 기관까
 지 지정검사기관을 확대 하
 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경
 우 기간과 경비는 상당히 줄

장을 곱하지 않았다. 특히 이
 문제는 이미 고시된 사항으
 로 만약 규정을 지키지 않으
 면 목록공시 품목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되물었다. 만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서 제외될 경우에

퇴비도 다른 품목에 비해 절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

퇴비의 비에시험 성적서 제출은 반드시 해야

경비는 20만 원 선에서 가능하도록

어 들 수 있으며 경비는 20만
 원 정도 선에서 가능하게 하
 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퇴비분야는
 별도로 전문 의원들과 토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서 안인과장과 전문위원들은
 퇴비도 농가 피해사례가 많
 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품목
 보다 절대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 비해
 시험은 실시해야 한다고 주

는 지자체 보조 사업에 경우
 참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
 으므로 목록공시제도에 따르
 기고 하고 대신 20만 원 선
 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해
 준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
 는 이 조건에 맞는 검사 기
 관이 지정 되는대로 일정을
 협의하여 희망 회원사에게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농협 납품업체 지정 업무 시작

재 지정이나 신규로 지정받
 으시는 업체는 10월 중순까

지 현장 실사를 마칠 예정이
 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